

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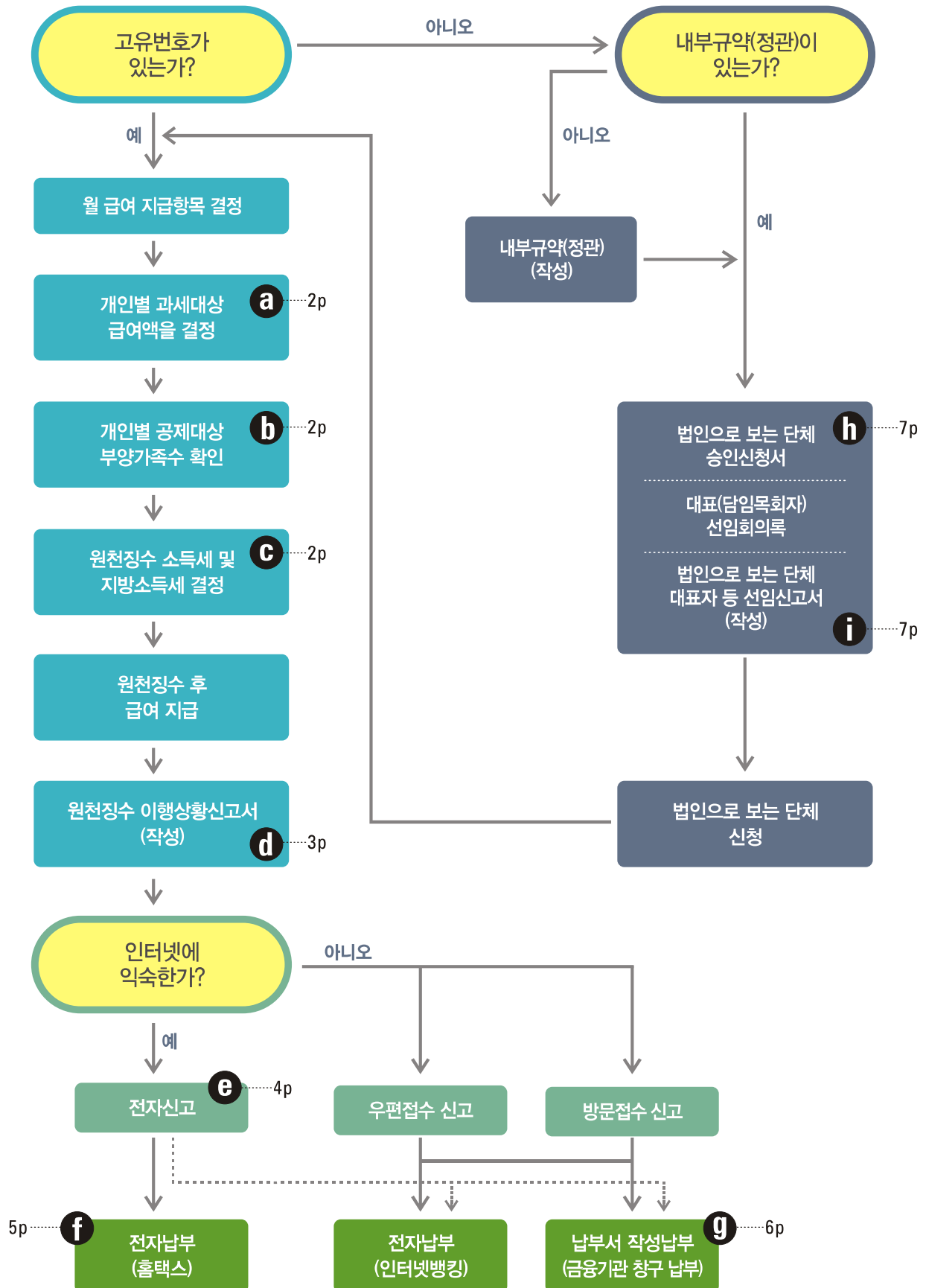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an.or.kr](http://www.cfan.or.kr)

본 자료는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목회자를 위한 간편 가이드 자료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an.or.kr](http://www.cfan.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8일 기준  
관련 세법규정개정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흐름도



# ○ 지급 항목별 분류 및 공제 금액 계산

소득세신고의 첫 단계는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항목을 분류하고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별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공제대상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 a 과세대상 월급여 금액 확인

급여지급액에서 다음의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월 10만원 이내 자녀 양육비(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본인명의 차량을 사용한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만 해당)

## b 공제대상 부양가족 인원수 확정

본인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해당합니다.

단,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인원 계산시 (자녀수-1)을 추가합니다. (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 20세이하 자녀
- 60세이상 직계존속
-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형제자매

## c 공제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 확정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과세대상 월급여 금액과 부양가족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의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합니다.(10원 미만 절사)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cal/cal\\_06.asp](http://www.nts.go.kr/cal/cal_06.asp)) 에서 공제할 세액을 바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 사례 ] 2015년 11월분 급여를 2015년 11월 30일 지급

급여내역: 209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식대보조 10만원, 체력단련비 8만원 포함)

가족관계: 본인, 배우자(근로소득 있는 학교 교사), 12세 아들, 3세 딸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제 189조 관련)

월급여액 (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1,840	1,850	15,940	11,440	3,420				
1,850	1,860	16,150	11,650	3,620				
1,860	1,870	16,350	11,850	3,820				
1,870	1,880	16,560	12,060	4,020				
1,880	1,890	16,770	12,270	4,220				
1,890	1,900	16,970	12,470	4,410	1,040			
1,900	1,910	17,180	12,680	4,610	1,240			

### [ 적용 ]

과세대상 월급여액: 209만원 - 10만원(육아수당) - 10만원(식대보조) = 189만원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본인(1) + 배우자(0) + 12세 아들(1) + 딸(1) + 20세이하 자녀추가공제분(1) = 4

- 월급여액 189만원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4인이 만나는 지점의 금액 1,040원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이며, 소득세의 10%인 100원(10원 미만 절사)이 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입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d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

앞 페이지에 제시된 사례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3.13.>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V]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2015년 1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채권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5년 11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교회		대표자(성명)	(담임 목회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발급 받은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교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교회전화)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④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0원, 일부비과세 포함)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기산 세	⑩ 소득세 등 (기산세 포함)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1,990,000	1,04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퇴직소득	가급계	A10	1	1,990,000	1,040			1,040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급계	A20							
	매월징수	A25							
계									

- ① 신고구분 : 6개월 단위 반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월'을 선택
- ② 귀속연월 : 소득 발생연월을 기록하며, 반기 납부의 경우 반기 개시월(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을 기록
- ③ 지급연월 : 지급한 연월을 기록하며 반기 납부의 경우 반기의 종료월(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을 기록
- ⑤ 총지급액 : 근로소득의 간이세액란(A01)에 기입하되,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록하며 월 10만원 이하 식대는 제외

비과세자 연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1,990,000	1,040				1,04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 ⑰)	⑰ 중립조정 환급세액계	⑱ 차질이월 환급세액 (⑲-⑳)	㉑ 환급 신청액
㉒ 전월 미환급세액	㉓ 기환급 신청세액	㉔ 차감잔 액 (㉒-㉓)	㉕ 일반 환급	㉖ 시책재 산 (금융 회사 등)	㉗ 그 밖의 환 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  
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신고인 (\*\*\*\*교회 000)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O" 표시를 합니다.

부표(4~6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연감전

- 원천징수는 목회자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교회가 그 금액을 받는 목회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신고 (전자신고/ 방문접수/우편접수)



신고는 작성한 신고서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방식으로 신고**하거나
- 납부서 양식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e 전자신고

•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서 세금신고(원천세)를 선택합니다.
3. 원천세 신고 중 일반신고'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4.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교회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표시된 교회 관련 사항 확인하고 하단에 있는 원천징수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6.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나타난 화면에서 소득 지급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 인터넷뱅킹 전자납부 / 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 청구납부)

- 신고한 홈택스 화면에서 바로 납부절차를 진행하거나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한 후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가 아닌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납부하거나 수작업으로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f 전자로 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초기 화면의 '신고/납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3. 좌측에 있는 '세금납부'를 클릭하고, 펼쳐진 화면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4.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선택
  - 가) 조회된 납부할 세액목록 확인한 후, 납부할 세목의 좌측에 있는 박스를 선택
  - 나)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세액	납부세액	담당자	전자납부번호
3,612,730		김현(0-)	0126-1510-3-41-8304511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

5. 하단의 금융계좌정보란에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6.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합니다.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계좌 및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별 납부가능시간 안내

공인인증에 따라 납부하신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2015	세목코드	1510341
정수기권명	동산(106)	납부자번호	1208760***
납세자성명	주식회사 한지모래어	납부자번호	1208760***
납부금액(원)		본세(원)	
과목세(원)	0	과목세(원)	0

상납부자 성명: 주식회사 한지모래어 상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1208760\*\*\*

\* 상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명: 국한 납부시간: 365일 01:00 - 23:00

통관상태: 정상

납부계좌번호: 4318C

계좌비밀번호: \*\*\*\*

납부하기 취소

# ○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 인터넷뱅킹 전자납부 / 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 창구납부)

## 9 납부서 작성방법(국세청 납부서 양식)

국세청(www.nts.go.kr)사이트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서식이름에 '납부서' 검색 →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내려 받기

### 가) 국세 (동일한 내용 3장이 1묶음)

- 분류기호:** 국세를 의미하는 '0126'을 기재합니다.
- 납부연월:**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월을 yyyyymm형식으로 기재합니다.
- 납부구분:** 원천분 자납을 의미하는 '4'를 기재합니다.
- 세목:**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14'를 기재합니다.
- 수입징수관서:** 관할세무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서코드:** 관할세무서 코드를 기재합니다.
- 계좌번호:** 관할세무서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2.23.> (앞쪽)

### 영수증서(납세자용)

분류기호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01512	4	14	(세무서 명칭)	(세무서코드)	(세무서계좌번호)
성명(상호) (성명)	(***)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금 받은 고유번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재
주소 (사업장)	(교회 주소)		전화번호			회계연도 (납부연도)

연도기분	2015년 11월												
	납부금액												
세목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소득세									1	0	4	0	
동여촌특별세													
계									1	0	4	0	

원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은    행    지점    (수납인)  
우    체    국

### 나) 지방소득세 (동일한 내용 3장이 1묶음)

신고하는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단위에 따라 구청 또는 시/군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42호 서식] (2014.8.8. 개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연월일	원본(지급)일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연월일	원본(지급)일
(***)교회		(납입 특회자 성명)	(납금 받은 고유번호)	(교회 주소)	(교회 전화)	2015년 11월분(지급 11월 30일)									
① 세목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군·구	원징	③ 납부액	일금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군·구	원징	③ 납부액	일금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1,040	⑦ 근로소득	108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⑫ 「소득세법」 제119조(상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8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⑮ 가감세액(조정액)	1,040	⑮ 가감세액(조정액)	108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97mm × 210mm(미세모조 80g/㎡)

h i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와 대표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서식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 [www.cfan.or.kr](http://www.cfan.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관 또는 규약
- 담임목회자 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제직회 회의록 사본
- 임대차 계약서(또는 전대계약서: 전대 계약 시 건물 주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 h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명칭	하나님교회	결성연월일
신칭 단체	주소	창립일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김재정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주지	담임목회자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종교(기독교)의 보급 및 전파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동산	*****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신청인 김재정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훈장이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i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명칭	하나님교회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칭 단체	주소	***-82-*****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선임(변경)연월일	담임목사 선임결의 공동의회 / 제직회 일시	신고서류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 ] 최초선임 [ ] 변경
주 소 또는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재정	*****-*****	
주 소 또는 거주지	주소	
주 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신고인 하나님교회 김재정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자주 묻는 질문

### Q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근로소득'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소속된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이 해당)

### Q2/ 목회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Q3/ 교회가 사례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해야만 하나?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종교인 소득의 경우 교회는 원천징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4/ 교회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개인이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가?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Q5/ 교회도 원천징수 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교회가 부담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무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Q6/ 급여지급항목의 명칭을 변경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수령하는 경우, 단순히 지급명칭을 변경한다고 비과세소득이 되지 않으며,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 Q7/ 매월 지급하는 사례비 관련 소득세 징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매월 급여 지급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6개월 단위로 7월 10일과 다음해 1월 10일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다음해 2월말

급여지급 관련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를 관할세무서로 제출합니다.

### Q8/ 사역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같은 부대경비들도 신고할 소득에 포함되는가?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 변상액과 교회가 소유,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은이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Q9/ 외부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게재하고 받은 강사료, 원고료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가?

소속된 지역교회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Q10/ 교회가 6개월(반기)단위로 원천 징수하는 시기를 매월 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가?

반기납부를 포기하면 매월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11/ 교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수가 89이다. 문제는 없는가?

소득세 신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자리 번호가 82번이고 89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Q12/ 관할세무서 코드와 계좌번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13/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인원이 1인 이상이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면 관련자료가 관련 공단으로 통보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이 교회로 발송됩니다.

## Q14/ 목회자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근로자가 되는 것 아닌가?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용인(사장, 대표이사 등), 피고용인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조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수령하는 금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기업체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15/ 목회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국가가 교회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증여세를 면제받고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미 국가가 조사 하겠다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소득세 신고가 정부의 간섭을 받는 주된 원인 행위는 아닙니다. 종교인소득과 관련한 세무공무원의 조사는 종교인소득 관련부분으로 한정 됩니다.

## Q16/ 교인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낸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

교인들의 소득과,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성직자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인과 성직자로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한 세금'과 '성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성직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부모가 십일조를 현금으로 낸 후의 남은 소득으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이미 현금한 수입으로 받았지만 스스로 다시 현금합니다. 귀속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현금 하는 것입니다.)

## Q17/ 사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는 금액규모는?

2016.1월 공포예정 기준 (세법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규모	필요경비율
2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의 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자주 묻는 질문

### Q18/ 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원천징수신고

소득자가 부담할 세액을 소득지급자가 소득 지급과정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적으로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예납적 원천징수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정절차인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말정산

1년간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와 소득자가 개인별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확정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규모와 부양 가족 수를 기준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절차의 확정적 정산절차입니다.

#### 종합소득신고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모든 국민은 1년간 소득 및 필요경비를 본인이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절차를 완료하면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Q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 근로장려금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40세 이상이며 가구 총소득이 일정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족: 2,100만원, 맞벌이가족: 2,500만원)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 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합니다.

위 두 제도는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와 같은 기본 정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Q20/ 소속교단 안에서 연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또 납부해야 하는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연금이므로 사적 연금인 교단연금 가입여부와는 무관한 필수 가입사항입니다.

### Q21/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무엇인가?

2015년 12월에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목회자의 사례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것입니다.)

교회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 의무사항이며,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회자 개인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식사대,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 교회가 소유 및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이외의 지급액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등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fan.or.kr](http://www.cfan.or.kr)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된 연대단체이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영남빌딩 205호 (우 07301)  
Tel 02-741-2793  
Fax 02-741-2794  
Email cfan05@hanmail.net  
www.cfan.or.kr

함 · 께 · 하 · 는 · 단 · 체 · 들

### 교회개혁실천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영남빌딩 205호 (우 07301)  
Tel 02-741-2793  
Fax 02-741-2794  
Email protest@protest2002.org  
www.protest2002.org

### 기독교경영연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8 신원빌딩 1층 (우 04157)  
Tel 02-718-3256  
Fax 02-718-3528  
Email kocam@kocam.org  
www.kocam.org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우 04382)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www.cemk.org

### 바른교회아카데미

서울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4층 (우 04629)  
Tel 02-777-1333  
Fax 02-319-1103  
Email gcacademy@hanmail.net  
www.goodchurch.re.kr

### 재단법인 한빛누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8길 17 2층 (재)한빛누리 (우 03044)  
Tel 02-924-0240  
Fax 02-924-0243  
Email thebrightfd@gmail.com  
www.thebrightfoundation.org